

VTS관련 선박 항적 자료 등의 정보공개 및 형사증거 요건에 관한 고찰

강현환* · 김승린** · 고영신***

*목포항VTS센터 관제사, **목포항VTS센터 센터장, ***목포항VTS센터 행정팀장

요 약 : VTS관련 선박 항적 자료 등의 정보 공개 및 형사 증거 자료 요건에 대한 관련 법률 검토로 업무 개선 방향을 모색하였다.

핵심용어 : 선박 정보 자료, 항적 자료, 공문서, 정보공개의 원칙, 비공개대상 정보, 전자적 정보, 디지털 증거, 증거능력, 진정성, 신뢰성



1. 서론

- VTS센터에서는 민사 및 형사상의 수사나 재판의 목적, 손해에 대한 보상 목적 등으로 선박 관련 자료제공 요청을 받았을 시 관련 법에 대한 정확한 확인 및 결정이 필요하다.
- 또한, 관련 선박에 대한 자료 제공 시에는 원활한 업무가 수행될 수 있도록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자료를 제공함이 필요하다.
- 이와 관련하여, VTS센터에서 선박 항적자료 등 관련 정보제공 관련 근거 법률 및 형사 증거자료로서의 요건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업무개선 방향에 대하여 생각해본다.

2. 선박 정보 자료 요청자의 형태 분류

- 선박의 사고 관련 손해에 대한 보상을 위한 보험사로부터 요청되는 선박 정보 관련 자료
- >(관련 근거)
 - 1) 정보공개법 제3조 "정보공개의 원칙", 제4조 "적용범위", 제5조 "정보공개청구권자", 제9조 "비공개 대상 정보" 제11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제12조 "정보공개심의회" 제13조 "정보공개 여부 결정의 통지"
 - 2) 해사안전법 제37조 "선박위치정보의 공개 제한 등" (요구 사항) VTS운영시스템의 레이더 영상 및 AIS관련 항적 자료



2. 선박 정보 자료 요청자의 형태 분류

- 관할 해경서에서의 수사목적으로 요청되는 선박 정보 관련 자료
- >(관련 근거)
 - 1) 형사소송법 제199조 "수사와 필요한 조사"
 - 2) 경찰관직무집행법 제8조 "사실의 확인 등" (요구 사항)
 - 1) VTS운영시스템의 레이더 영상 및 AIS 관련 항적 자료
 - 2) VTS 근무일지 및 관제일지, VHF 녹취록

* 선박교통관제운영규정 제25조 (자료보존기간)
->근무일지1년, 관제일지3년, 관제운영상황 녹음 및 녹화자료 2월

2. 선박 정보 자료 요청자의 형태 분류

- 해양수산부 관할 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행정처분의 목적으로 요청되는 선박 정보 관련 자료
- > (관련 근거)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48조 "증거조사" (요구 사항)

 - 1) VTS운영시스템의 레이더 영상 및 AIS 관련 항적 자료
 - 2) VTS 근무일지 및 관제일지, VHF 녹취록

* javelin12@korea.kr

3. 관련 법률 검토

- 제3조 (정보공개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공개
-> 정보공개는 '헌법 제21조 언론의 자유'와 관련하여 국민의 알 권리에 해당
- 제4조 (적용범위):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 관련 특별법과 정보공개법의 상충 방지
- 제5조 (정보공개 청구권자):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 재판 및 수사기관 등 공공기관의 특별한 법률적 근거 뿐만 아니라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정보공개 요청자에 대한 정의

3. 관련 법률 검토

- 제9조 (비공개 대상 정보): 제1항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대통령 및 조령으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해사안전법 제37조 (선박위치정보의 공개 제한 등)
제1항 항해자료 기록장치 등 해양수사부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수단으로 선박의 항적(航跡) 등을 기록한 정보(이하 "선박위치정보"라 한다)를 보유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박위치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관련 법률 검토

- 제11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공공기관은 정보공개 청구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
-> 10일 이후 10일 연장하여 최대 20일의 범위까지 정보공개 여부 결정 및 결정 여부 청구인에 문서로 통보해야 함
- 제12조 (정보공개심의회): 국가기관, 지방단체 및 공기업은 제11조에 따른 정보공개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 운영
-> 심의회 운영으로 정보공개 여부 결정
- 공공기관은 비공개대상정보의 공개에 대하여는 재량권을 가진다. 공개 여부의 결정은 당해 정보의 공개로 달성될 수 있는 공익과 사익과 비공개로 하여야 할 공익 및 사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3. 관련 법률 검토

- 형사소송규칙 제134조의4(음성·영상자료 등에 대한 증거조사)
제1항 녹음·녹화테이프,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음성이나 영상을 녹음 또는 녹화(다음부터 이 조문 안에서 "녹음·녹화 등"이라 한다)하여 재생할 수 있는 매체(다음부터 이 조문 안에서 "녹음·녹화 매체 등"이라 한다)에 대한 증거조사를 신청하는 때에는 음성이나 영상이 녹음·녹화 등이 된 사람, 녹음·녹화 등을 한 사람 및 녹음·녹화 등을 한 일시·장소를 밝혀야 한다.
-> 디지털 음성, 영상 등의 자료(항적 관련 동영상, VHF 녹취록)가 증거능력의 인정을 위한 진정성이 확보되기 위해서는 정보의 신뢰성이 필요함

3. 관련 법률 검토

- 형사소송법 제315조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 다음에 게기한 서류는 증거로 할 수 있다.
제1호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공정증서등본 기타 공무원 또는 외국공무원의 직무상 증명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 작성한 문서
제2호 상업장부, 항해일지 기타 업무상 필요로 작성한 통상 문서
제3호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
-> 항적자료관련 공문서, 관제일지, 근무일지 등이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에 해당된다고 사료됨, 특히 신용 할만 상태의 자료는 증거능력이 있음

4. 형사 증거로서의 항적 자료 등의 요건

- 증거의 의의 및 증거능력
- 형사소송에서 증거란 사실인정의 근거가 되는 자료를 말한다. 증거는 증거방법과 증거자료의 두가지 의미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증거방법이란 사실인정의 자료가 되는 유형물 자체를 말한다. 증인,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이 여기에 속한다. 이에 대하여 증거자료란 증거 방법을 조사함에 의하여 알게 된 내용을 말한다. 예컨대 증인신문에 의하여 얻게 된 증언, 증거물의 조사에 의하여 알게 된 증거물의 성질이 그것이다.
- 증거능력이란 증거가 엄격한 증명의 자료로 사용될 수 있는 법률상의 자격을 말한다.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1항 증거재판주의는 엄격한 증명의 법리를 입법화한 것이다.

4. 형사 증거로서의 항적 자료 등의 요건

● 전자적 정보(전자기록)의 증거능력

1) 전자적 정보(전자기록)의 정의

- 전자적 방식, 자기적 방식 기타 사람의 시각에 의하여 그 존재 및 상태를 인식할 수 없는 방식으로 작성된 디지털 신호의 집합체로서 컴퓨터에 의한 정보처리의 용도에 제공되는 것을 말한다.

2) 전자적 정보의 증거능력 인정

-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정보(문자, 사진, 영상)는 형사소송법 제313조(진술서등) 제1항에 의해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증거능력이 인정함

4. 형사 증거로서의 항적 자료 등의 요건

● 전자적 정보(전자기록)의 증거능력

2) 전자적 정보의 증거능력 인정

- 전자기록 가운데 공무원이 작성한 증명문서로서 컴퓨터로 작성한 서면이나 그에 준하는 컴퓨터기록들은 형사소송법 제315조(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에 따라 당연히 증거능력을 인정함

- 정보저장매체로부터 출력한 문서가 증거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전자기록과 출력문서의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함

-> 전자적 정보(항적자료관련 공문서 등)가 증거능력의 인정을 위한 진정성이 확보되기 위해서는 정보의 신뢰성과 동일성이 확보되어야 함

4. 형사 증거로서의 항적 자료 등의 요건

● 디지털 증거인 항적자료의 증거능력에 대한 진정성 판단 요건

1) 무결성: 최초증거가 저장된 매체에서 법정에서 제출되기까지 디지털 증거의 변경이나 훼손이 없어야 한다.

2) 동일성: 원본에 저장된 내용과 출력문건의 동일성, 원본을 하드카피하거나 이미징한 경우에는 원본과 복제본과의 동일성을 의미한다.

3) 신뢰성: 디지털 증거를 수집, 분석하는 과정에서 이용한 컴퓨터의 기계적 정확성, 프로그램의 신뢰성, 입력, 처리, 출력의 각 단계에서 조작자의 전문적인 기술능력과 정확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 동영상 또는 pdf파일 등 전자매체저장 정보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무결성, 동일성, 신뢰성 필요

5. 업무개선방향

● 디지털 증거자료인 항적 자료 등에 대한 전문성 필요

1) 관련 장비 및 관련 법률에 전문성을 가진 추가 인력 확보 필요

-> 현재 조직내 있는 형사관련 및 정보관련 전문가에 대한 관제센터 추가 배치로 관련업무 전담(관련 특기 전문가 추가 인력 임용 고려)

- (1단계) 본청 관제과 전문인력배치 및 관련업무 전담

- (2단계) 지방청 관제계 전문인력배치 및 관련업무 전담

- (3단계) 각 관제센터별 전문인력배치 및 관련업무 전담

*전문기관 교육훈련 후 인력배치필요

5. 업무개선방향

2) VTS 관련 디지털 증거 및 관련 증거 자료 전문 시설 개발 및 유지보수 업체 필요

-> 선박자동식별장치(AIS) 및 선박의 레이더 영상 위치에 의한 시간대별 항적 자료 자동 출력 장비 개발

-> VHF 무선설비의 음성 내용을 자동으로 문자로 변환할 수 있는 장비 개발

-> 정기적인 전문유지보수 업체의 관리로 증거자료 작성에 대한 보증이 된 장비 유지

-> VTS 관제 관련 디지털 정보 증거자료 장비 개발로 무결성, 동일성, 신뢰성을 확보한 VTS 관련 증거자료 출력 가능

6. 맺음말

● 정보공개청구권은 헌법상 국민의 알 권리에서 나온다. 알 권리는 헌법 제 21조의 언론의 자유에 당연히 포함되는바, 이는 국민의 정부에 대한 일반적 정보공개권을 구할 권리라고 할 것이다.

● 하지만, 유관기관 및 엇 단계에서 VTS센터에 요구하는 항적자료 등에 대한 정보공개 시에는 정보의 특성상 신중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

● 또한, 형사 증거로서 항적 자료인 디지털 자료의 경우는 무결성, 동일성, 신뢰성이 요구되는 증거자료인 것을 고려하여 전문성이 있는 인력을 확보 하고 전문 설비 및 전문 유지보수업체를 선정하여 유지 및 개발하는 것이 관련 업무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사료된다.

참고 문헌

- [1] 법제처(인터넷 사이트) “법령정보”
- [2] 권양섭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에 관한 고찰” 법이론실무연구 4(1), 한국법이론실무학회, 2016.4
- [3] 이철환 “제4판 행정법 일반이론” 전남대학교 출판부, 2016
- [4] 이은모 “기본강의 형사소송법” 박영사, 2016
- [5] 이재상, 조균석 “제10판 보정판 형사소송법” 박영사, 2016